

## ◎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6-93호

우편법 제19조(우편요금 등의 결정),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 및 동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에 따라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, 독촉고지 및 체납(압류예고) 고지 등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05월 19일

전남지방우정청장

### 공시송달공고

1. 제 목: 국고금 장기 체납자 납부 최고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

#### 2. 근거법규

- 가. 우편법 제19조(우편요금 등의 결정)
- 나.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 및 동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
- 다. 국세징수법 제10조(독촉) 및 제3장 강제징수
- 라.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
- 마.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
3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(2026.5.19.~ 6.2.)

#### 4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(단위: 원)

체 납 자		체 납 내 역		
성 명	주 소	징수결의번호	부과금액	징수과목명
모아푸*	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23번길 **	126909544 등 2건	136,360	후납우편료
한성물*	전남 광양시 광장로 **	191034081 등 4건	2,985,060	국유재산사용료

5.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☎(062)600-47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